

税制合理化의 論理와 現實的問題点

林升準

韓國經濟新聞●論說顧問

目次

- I. 転換点에 선 韓國税制
- II. 稅制改編을 추진하는
背景과 方向
- III. 合理的인 稅制의 條件
- IV. 現行税制의 主要 問題点과
葛藤

I. 転換点에 선 韓國税制

現行税制를 개편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稅制가 어떻게 달라질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많은 论議가 일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稅金이 부과되는 公準의 변화와 稅부담수준의 변동을 의미하는 稅制개편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도 관심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稅制개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국민의 관심은 서로 다른 次元에 있게 마련이며 극단적인 표현을 빈다면 対立의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稅金이 지니는 성격과 영향에서 발단되고 있다.

다시 부언한다면 稅金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고유기능과 諸活動을 뒷받침해주는 經常的인 収入源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이며 개별적인 反對給付가 수반되지 않는 회생적인 金錢支出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부는 필요한 財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稅制를選好하게 마련이고 반대로 국민은 될 수 있는 대로 稅부담이 가벼운 稅制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매우 常識的인 이야기 같지만 稅金과 稅制에 관한 모든 論議는 徵稅者와 納稅者관계의 이러한 二律背反性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稅制발전심의위원회가 재무부의 위촉을 받아 새 稅制의 成案작업을 하고 있다. 財務部의 稅制개편日程에 의하면 우선 올해안에 租稅감면규제법을 개정한 뒤 늦어도 86년上半期 안에 모든 개편을 마무리질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韓國의 稅制가 全面적으로 바뀌는 転換点에 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稅制개편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가. 또 現行税制가 안고 있는 缺陷과 問題點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合理的인 税制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인가.

II. 稅制개편을 추진하는 背景과 方向

税制개편의 방향과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정부의 意圖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부의 意圖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税制개편의 背景과 方向에서 엿볼 수 있다. 정부는 税制개편의 背景으로서 ①방위세법('85년말), 조세감면규제법('86년말), 교육세법('86년말) 등 時限法의 時限 만료 ②'86년이후 가능하게 돼 있는 金隔實名去來制의 실시 ③5차 5개년계획의 86년종료에 後續하게 될 6차 5개년계획의 실시 ④'86년까지 완료키로 돼 있는 알기 쉬운 税法마련을 위한 조세법령整備작업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税制개편방향으로서는 ①공평하고 適正한 税부담체계의 定立 ②80년대후반 이후의 財政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는 租税구조의 마련 ③產業의 경쟁력을 提高하면서 市場經濟体制에 적합하도록 租税의 中立性을 강화하는 租税支援제도의 再定立 ④국민이 알기쉽고 税政效率化에 도움되는 税制에의 指向이 提示되고 있다.

背景 설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상황 등 税制與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現行税制를 미봉적으로 부분개편할 게 아니라 税制 전반에 걸쳐 根本的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정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또 개편방향에서는 税制의 公平性과 中立性 및 簡明化가 강조되는 한편 財政수요의 충족이

실현돼야 할 課題로 설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疑問點은 根本的인 税制개편의 真意가 税부담을 公平化하는 税体系 자체의合理화에 보다 力点을 둔 것인지 또는 歲出主導의 財源確保를 더 重視하는 것인지 分明치 않다는 것이다. 이 点은 税制개편에 앞서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公平化나 財源確保의 指向은 앞으로 마련 될 税制개편의 내용을 左右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税制는 年中行事처럼 거의 해마다 개편이 있어 왔다. 그때마다 公平化보다는 財政수요를 충족하는 財源확보가優先돼 왔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방위세, 교육세 등 의 도입으로 税收를 增大시키는 한편에서 基幹산업, 重化學공업,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資本축적과 投資재원 조달을 돋는 특정부문에의 조세감면을 집중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高度成長을 뒷받침하는 税制로서의 구실은 한 쌤이나 税制가 갖추어야 할 税부담의 公平性과 자원배분의 中立性은 뒷전에 밀리게 됐다. 資本축적을 지원하는 利子, 配當 등 財產소득에 대한 優待稅制와 특정전략산업에 대한 投資감면稅制는 기업소득·근로소득간에 税부담의 不公平현상을 가져왔고 이러한 直接稅부문의 不公平화는 전체 税收의 64%까지 차지하기에 이른 間接稅의 逆進性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또 中立性이 弱化된 税制는 同一與件에 의한 自由경쟁이라는 市場경쟁원리를 沮害했다. 税制特惠을 받는 소수의 업종과 소득階層에게 實效税부담을 낮게 해준 이러한 税制는 정책적인 税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업종과 소득階層의 税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税부담의 公平化는 税体系의合理화를 지향하는 税制개편의 優先課題가 돼야만 새 税制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公平화의 追求가 많은

분야에서 財政수요의 증대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指向과 특정 산업의 高度화를 요구하는 경제상황 아래서 얼마나 実現될 수 있는가에 있다. 일례를 들면 우리는 국제적인 경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의 경쟁력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할 국가적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경쟁상대국들보다 앞선 수준에서 산업의合理化,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혁신적 개발이 실현돼야 함을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택되기 쉬운 정책수단의 하나가 그런 부문들에 대한 特別税制지원인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税制의 公平性은 그만큼 약화되게 마련이다. 이미 정부 자신이 내놓고 있는 「不実企業정리와 產業合理化 및 家計貯蓄을 촉진시키기 위한 租稅감면규제법 개정안」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에 속한다. 그밖에도 기술개발연구 투자와 균로충의 증권·보험貯蓄을 비롯한 적지 않은 부문에 대한 非課稅, 稅減免 등 税制支援이 정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税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税目的 대부분이 直接稅라는 사실이다.

直接稅부문의 税감면이 계속 확대될 경우 그것은 정부의 税制개편방향에서 제시되고 있는 税 부담의 公平化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높은 間接稅 比率의 是正을 위해 提起되고 있는 直接稅 비율의 인상과 相衝하게 된다. 이점은 앞으로 税制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갈등 요인의 하나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III. 合理的인 税制의 條件

税制의 根本的인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姿勢는 정부측의 개편意圖에 구속됨이 없이 税制의 規範의 기준이라는 原点에서 合理的인 税制의 條件을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현대경제정책의 일반적 목표로서 重視되고 있

는 것은 所得分配의 平等化, 資源의 效率的 利用, 安定成長의 유지 등이다. 여기서 最適租稅 구조를 가져올合理的인 税制의 條件을 생각하면 그것은 ① 税부담의 配分이 公平해야하고 ② 資源利用의 效率을 低下시키지 않아야 하며 ③ 經濟의 安定化에 기여하는 동시 經濟成長을 助長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追加해야 할 것은 財政需要를 充足할 수 있는 財源확보라는 조건과 稅務行政의 民主化를 위한 税制의 簡素화와 平易化라는 조건이다. 그것은 아무리 公平化와 效率化 및 成長을 보장한 税制라 하더라도 財源확보에 未汲한 것이라면 税制의 固有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또 복잡한 体系에다 難解한 税制는 국민의 支持와 協調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税制의 조건으로서 꼭 追加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重視되고 있는 것은 税부담의 公平化를 위한 課稅의 公平化이다. 이 古典的인 規範은 이번 税制개편사업에서도 最優先的 목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課稅의 公平化는 水平的 公平과 垂直的 公平의 두 原則의 실현을 말한다.

水平的 公平이란, 課稅上 「같은 상태에 있는 者는 同等하게 取扱돼야 한다」는 原則이고 垂直的 公平이란 「相異한 상태에 있는 者는 相異한 取扱을 해야 한다」는 課稅原則이다. 쉽게 말하면 같은所得에 대해서는 같은 税부담이 있어야 하고 低所得에 대해서는 輕課稅하되 高所得에 대해서는 重課稅해야 한다는 것이다. 高所得에 重課稅하는 累進소득세의 근거는 이 垂直的 公平의 原則에 의해 부여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現行税制의 缺陷은 매우 많다.

소득세부분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급여소득과 事業소득·自由직업소득 간의 不公平한 税부담이다. 税源이 완전파악되는데다 源泉徵稅되는 근로자소득은 申告課稅 되는

사업소득에 비해 무거운 稅부담을 지게 돼 있다. 그밖에 상대적으로 낮은 資產所得課稅와 逆進의 間接稅에 치우친 税구조는 税부담의 公平化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效率化는 課稅의 中立性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것은 課稅가 가져올 間接의 超過부담을 最小化하기 위한 基準으로 요청된다. 家計의 노동의욕, 소비, 저축,企業의 생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資源分配의 效率化에 초과부담으로서의 費用을 추가하는데 税制의 中立化는 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資源利用을 效率化하기 위해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中立性의 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特定업종에 대한 投資減免稅와 消費課稅의 不均衡의 税率이다. 그것은 특정부문의 投資와 消費에 대한 反中立의 誘因을 통해 資源分配을 歪曲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自由경쟁원리가 바탕이 된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는 特定산업에 投資를 誘因하는 傾斜의 税制는 企業투자에의 정부介入을 의미하며 그 결과 資源의 效率的利用을 沮害하는 것이다. 公平性과 中立性에 더하여 오늘의 世界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經濟成長을 뒷받침하는 税制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公平性과 中立性 그리고 簡素化라는 税制의 조건과 相衝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成長을 촉진시키려고 하면 貯蓄·投資에 税制上の 優待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특정의 階層과 產業에 税惠澤을 줌으로써 課稅베이스를 축소하거나 税率을 완화하는 한편 税体系를 歪曲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税制는 經濟成長을 촉진하는 구실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지난친 誘因조치의 누적은 오늘에 와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得보다 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租稅감면조치같은 税支援 조치는 時限을 最小化하고 꼭 필요한 부문에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전반적인 税率引下 등 税体系全

체의 合理化를 통해 成長을 촉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長期的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財政需要는 늘어날 추세에 있고 이에 대응하는 財源확보를 위해서는 現行税制의 全般的 개편이 큰 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정부의 機能과 活動이 축소되지 않는 한 現行税制로는 財政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편 追加의 税부담을 지게 되는 국민의 納稅協力を 필요하게 하는데 그러자면 税制는 복잡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 稅務공무원이나 稅務士만 理解할 수 있는 어려운 표현으로 편성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税制의 簡素化·平易化가 국민의 支持를 얻는 税制의 民主化를 위해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財源확보가 税制條件의 하나라고 해서 그것이 税부담의 계속증가를 초래하는 財政의 張창을 容認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財政의 張창은 국민의 租稅能력과 經濟상황의 制約을 받게 마련이지만 財源확보라는 税制조건은 항목별 歲出수요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浪費요소를 제거하는 것을前提로 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税부담의 경감과 民間 영역의 확대를 指向하는 效率의 「작은 정부」의 視角에서 政府機能을 再点檢하는 作業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税制의 條件은 그밖에도 있을 수 있다. 問題는 이 모든 조건을 실현할 수 있는 税目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각 税目의 성격, 特質을 파악하고 經濟상황에 알맞게 각종 税目을 配合시킴으로써 税体系全体로서의 最適狀態를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

IV. 現行税制의 主要問題点과 葛藤

現行税制의 問題点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

할 수 있겠지만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은 租税부담의 增加와 税부담의 不公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국민의 租税부담은 GNP에 대한 부담비율로 표시되고 있는데 84년에는 19.6%에 달하고 있다. 日本의 19.4% (84년), 美國의 21.6% (82년), 臺灣의 19.1% (82년)에 비해 大差가 없으며 英國, 西獨 등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볼 때 우리나라의 税부담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첫째 GNP 규모와 1인당 GNP 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先進國에 비교하면 우리의 税부담은 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固定資產소비총당금(감가상각)과 間接税를 포함한 GNP기준의 부담율계산은 間接税 비중이 큰 韓國의 税부담율을 실지보다 낮게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 안된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税부담율은 20%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는 名目上 부담율이 先進國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하지만 부담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훨씬 높다는 先進國의 경우 惠譯의 歲出을 통한 社會보장적 補助金의 家計환원액이 韓國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税부담수준은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는 GNP기준의 租税부담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의 税부담은 국제비교상 가장 큰增加速度로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62년에 10.6%이었던 税부담율은 20여년간에 거의 倍增하고 있다.

이런 增加추세에 制動이 加해지지 않을 경우 GNP를 기준한 우리의 税부담율은 80년대후반에 가면 25% 수준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GNP에서 차지하는 一般會計 이외의 公共部門 比重과 민간의 각종 準租税的 支出

을 고려에 넣을 경우 증가추세에 있는 税부담은 民間經濟의 活性화를 沦害함으로써 税源을 고갈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민의 租税力과 經濟상황에 알맞는 수준으로 税부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經濟活性화를 유도함으로써 税收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税率의 全般的引下조정과 課稅ベ이스의 包括性 확보를 반영한 税구조가 새로 마련돼야 하는 한편 歲出의 效率化와 歲出수요의 엄격한 규제를 指向하는 財政刷新이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税制의 또 하나의 큰 問題点인 税부담의 不公平은 過重하다는 税부담감을 더욱 무겁게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現行 税制에서 水平의 公平이나 垂直의 公平의 原則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같은 수준의 소득인데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税부담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税부담을 해야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벼운 税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우선 税구조면에서 逆進的인 間接税가 應能的인 直接税보다 훨씬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間接税와 直接税의 비율은 64 대 36이다. 지난 72년에 半半이었던 이 比率은 77년의 附加價值税의 도입을 계기로 間接税로 比重을 移行했다.

국제비교를 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附加價值税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41.3%), 西獨 (48.2%) 프랑스 (60.2%) 보다도 우리나라의 間接税 비중은 월등히 높다.

間接税의 逆進性은 최종수요자이면 소득이 높고 낮은 것과 관련없이 똑같이 稅金을 내야 하는 관계로 소득이 낮은 階層은 소득이 높은 階層보다 무거운 税부담을 하게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所得이 낮은 階層일수록 그 税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게 間接税이다. 間接税에 편중된 税制는 垂直의 公平을 저해할 뿐 아니라 所得彈力度가 낮아져서 所得稅 고유의 所得再分

配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 間接稅의 逆進性을 완화하고 間接稅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 附價加值稅를 定着시키기 위해 13%의 基本稅率은 더 引下하고 加減 3%의 彈力稅幅은 더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主要 間接稅인 特別소비세의 대상품 목과 세율도 現實에 알맞게 개편돼야 한다. 高所得層의 사치재 소비에 重課稅함으로써 부가 가치세의 逆進性을 완화하려고 도입된 特消稅는 현재 大衆수요품으로 변화한 품목도 稅도입 당시의 사치품으로 취급하여 高率의 課稅를 함으로써 税부담의 逆進性을 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税부담의 不公平性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 있고 또 실지로 그렇게 돼 있는 대상은 所得稅를 中心으로 한 直接稅분야이다.

그것은 ① 利子, 配當, 不動產 등 주로 高所得層에 귀속되는 財產소득에 대한 分離課稅 ② 相續·贈與에 대한 租稅기능의 약화가 直接稅의 長點인 應能부담에 구멍을 뚫어노았기 때문이며 名目的인 高稅率 속에서 각종 非課稅·減免稅, 特惠的 低率課稅로 實效稅率를 낮추어준 결과 税金을 내는 사람에게만 過重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法人稅보다 所得稅 규모가 크고 所得稅 중에서도 紿與所得者의 봉급에서 걷는 源泉徵收分이 事業소득자, 自由직업소득자의 申告分보다 比重이 크다는 사실에서 実證되고 있다.

84년의 경우 法人稅는 前年比 6.9%가 늘어난 9천 2백 35억 원인데 所得稅는 前年比 8.2%가 늘어난 1조 2천 2백 91억 원이었다. 特記할 사실은 紿與소득자의 봉급에서 걷는 源泉徵收分이 전체 所得稅 중 63%에 해당하는 7천 7백 53억 원이며 申告分은 총소득세 중 37%에 불과한 4천 5백 37억 원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증가율은 83년에서 84년까지 1년간에 源泉徵收소득세는 10.8%가 增収됐고 申告소득세는 4.1%가 增収됐는데 79년을 기준으로 하면 6년간에

源泉徵收소득세는 무려 1백 36%가 增収됐으며 申告소득세는 58%가 增収된 것이다. 근로소득총의 약 70%가 免稅点以下의 非課稅근로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소득세부담은 中間 근로소득階層에 過重하게 集中되고 있으며 紿與 근로소득총이 다른 사업소득階層에 비해 얼마나不公平한 税부담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紿與소득에 대한 源泉徵收제로 인해 所得捕捉率이 거의 1백 %인데다, 所得公제가 있어도 사업소득자와 自由직업소득자에 인정되고 있는 높은 必要經費公제에는 훨씬 未及한 公제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자와 自由직업 소득자는 申告課稅로 所得이 완전히 포착안되는데다 必要經費公제가 있고 所得발생과 納稅간의 時差로 金利손실이 없어 급여소득자보다는 相對적으로 낮은 税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所得稅의 이러한 不公平을 是正하기 위해서는 申告소득자의 소득稅源捕捉率을 높이는 장치의 연구와 함께 급여소득자인 근로階層의 源泉徵收소득세율을 다른 소득층에 비해 不利하지 않게 引下하고 税額公제를 채택하지 못하면 所得公제율을 인상해주는 税부담 경감조치를 강구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税부담의 公平性 뿐만 아니라 中立性을 沮害하고 있는 租稅감면의 特別 조치가 問題인데 이는 정착목적의 重要性과 有效性이라는 플라스의 效用과 税의 公平性과 中立性을 침해하는 마이너스 效用을 比較검토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対象부문을 最小化하는 동시 엄격히 時限을 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租稅감면을 규제하고 그 정책목적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租稅의 補助支出을 의미하는 감면항목을 西獨, 美國처럼 「租稅歲出豫算」으로 편성하여 國會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앞으로 地方自治制의 실시에 대응하는 地方

稅体系의 合理化 문제 등이 있으나 稅制개편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課稅의 公平化를 실현하면서도 財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되 企業活動이나 個人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稅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정부의 경우 단순히 財政수요의 확보에 편리하다고 해서 稅体系의 歪曲을 무릅쓰는 臨時方便的인 接近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納稅者の 각종 利害集團도 不公平税制의 是正이라는 方向에 賛成하면서도 自己에게

不利할 경우에는 反對하는 소위 「總論贊成·各論反對」의 입장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姿勢아래 정부와 民間이 現行税制가 앓고 있는 不合理한 부분과 直·間税 比率의 不均衡 및 公平性과 中立性을 潟害하고 있는 問題点들을 바람직한 稅制의 條件에 맞추어 是正해가는 개편노력을 계속할 때 우리는 80년대 후반에 対應할 수 있는 公平하고 效率的인 稅制를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 토막상식 ◇

소주의 역사

페르시아에서 발단이 된 소주는 일명 아라키주(亞刺吉酒)라 불렸는데 몽고인이 페르시아의 회교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종류방식에 의한 술이 동방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류주를 아라비아어로 아라키(Arag)라 한해서 몽고어로는 아라키(亞刺吉), 만주어로는 알키, 우리나라에서는 아락주라 하였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소주를 아람주, 아랑주라 부르기도 한다.

소주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고려 충렬왕 때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시에는 약용주, 고급주로 사용했다 한다. 문헌상에 소주가 약용으로 사용된 기록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조 단종은 몸이 냄새 허약하여 중신들이 약으로 소주를 고아 올린 기록이 있으며 성종 때는 일반민가에서 소주를 마시는 것이 극히 사치스러운 일이라 하여 금지시킨 기록도 있다.